● 제30회 전국도서관대회 기조연설

우리나라 도서관 행정의 당면과제

한 상 완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I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말은 구약성서 전도서에 기록된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세월의 흐름을 묘사한 문장 중 이 글만큼 널리 알려져 있고 적절한 표현도 드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 도서관 행정의 당면 과제란 주제로 전국도서관대회를 개최하고 있는 횟수가 어느덧 제30회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 한 세대를 정리하며 오늘 우리의 문제를 짚어보고 내일의 비젼을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회고컨대 지난 30여년간의 도서관대회는 학술적인 주제와 도서관이나 문헌정보관리의 실제적 주제를 택하여 발표하고 토론하여 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줄기차게 우리들은 도서관의 위상과 현대적 도서관 기능의 중요성을 부각하고자 음양으로 노력하였으며 대 정부, 대 사회에 정보와 도서관의 중요성, 국가 발전에 얼마나 이 사회적인 정보문화 장치가 크게 기여할 것인가를 목청을 다해 외쳐왔던 사실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공인받고 이룩한 것이 법적인 면에서 1963년 10월 28일에 공포된 도서관법(법률 제1,424호)이었으며, 실로 24년만인 1987년 11월 28일에야 전면 개정할 수 있었던 도서관법(법률 제3,972호), 그리고 도서관 정책의 담당부서가 논란 끝에 신설된 문화부로 이관되면서 도서관법을 폐지하고, 1991년 3월 8일에 제정 공포된 도서관진흥법(법률 제4,352호)이 그 결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진흥법의 제정이유를 정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즉 "최근 도서관은 교육, 정보 및 문화의 중심기관으로서의 그 기능과 역할이 크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도서관이 대학 등 각급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교육적 기능을 수행하는 외에 각종 문화시설과 협력하여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향수권을 신장하고, 도서관 업무의 전산화·표준화 및 협력망을 구축하여 정보의 이용과 유통을 활성화하며, 특히 공공도서관에 대한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립·추진함으로써 도서관의 획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법 제정 이유는 이 시대와 국가사회가 처한 정황을 비교적 정확히 짚고 도서관이 기능하여야 할 바를 법에 구현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주제인 도서관 행정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거리가 있는 듯 싶습니다만 이 시대, 특히 다가올 2000년대의 문명의 흐름과 거대한 변혁에 응전할 우리 사회와 나라의 좌표를 잠시 생각하여 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도서관 행정의 당면과제가 무엇이며 어디로 그 정향점을 삼아야 할 것인가를 좀 더 분명히 할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세계의 선진국 그룹은 정보사회(Information Society)로 진입하고 있거나 진입했다 함은 문명사에서 매우 중요한 변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정보사회의 모습을 고도산업사회로써 그 변화해가는 모습을 간략히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이 묘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강제적 기술에서 첨단기술/하이터치로
- 국가경제에서 세계경제로
- 단기에서 장기로
- 집중에서 분산으로
-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참여의 민주주의로
- 피라미드형 위계질서에서 네트워크형으로
- 북에서 남으로
- 양자택일의 이분법적 선택에서 다양한 선택으로의

변화를 가능케 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또한 이를 뒷받침하는 두 축이 전자공학을 기저로 한 기술혁명의 성과와 뉴미디어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고 있다 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변혁의 핵심부분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은 요소는, 이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정보라는 요소입니다. 이 나라가 정보의 효율적 이용을 바탕으로 문명의 큰 흐름인 정보사회를 순조롭게 달성하여 세계사의 중심에 설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변두리로 밀려날 것이냐에 관하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깊이 인식할 때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이 세계적인 관심사요 변화발전의 요체가 되는 정보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문직의 관심과 업무의 대상인 정보의 선정, 분석, 배포, 관리, 그리고 효과적인 제공은 이 사회의 생존전략은 물론 발전을 위하여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를 생각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보전문가로서 우리들이 전문적인 기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나라 전체의 차원에서 어떠한 정보와 도서관 행정체계를 조직 유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긴요한 국가 사회적 관심사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미래 세계를 내어다 보면서 정보와 문화를 간직하고 다루며 이를 통해서라야 나라 발전의 지름길을 마련할 수 있다는 선명한 기치를 들고 외쳐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때로는 메아리없는 외침과 호소로 그쳤으며, 때로는 정부 당국의 미미하기 그지없는 반응에 좌절해야 했었습니다. 이는 지난 40여년간 도서관 정책과 행정의 관할 주무부서였던 교육부에 전담 행정 조직의 최하위 직제인 계조차 마련하지 못했던 참담함을 상기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대로 지난해 3월에 도서관진흥법이 공포되고 곧이어 문화부 어문출판국내에 도서관정책과를 신설하게 되면서 도서관 정책과 행정에서의 최우선 과제의 일부가 일차적으로는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서관진흥법의 제정과정과 동 시행령의 마련, 그리고 도서관정책과의 설치는 과거 30여년의 우리나라 도서관 행정의 불모와 정책부재의 우를 벗어나는 기초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보사회로 발전하여가면서 치열한 국가간의 경제전쟁에서 살아남고 민주복지국가로의 발전전략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정보와 도서관 발전의 중요성을 과연 정부가 잘 이해한 토대위에서 도서관진흥법의 내실과 행정조직을 마련하였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고 흔쾌히 대답할 수 없는 점은 실로 유감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왜 전문가 집단인 우리들이 정부의 도서관 행정과 정책에 대하여 비젼을 갖지 못한 미흡한 것이라고 비판할 수 밖에 없으며, 도서관계 자체의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여기에서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II

정부는 문헌정보학자들과 도서관 전문직 단체의 강력하고도 비젼있는 의견을 도서관진흥법과 그 시행령에서 상당한 부분을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서 마련하는데 그쳤습니다. 당초에 도서관계와 문헌정보학계에서는 정보도서관발전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의 자문위원회로 구성하거나 그렇지 못할 때에는 최소한 국무총리 직속의 위원회로 구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면서 요구하였으나 결국 문화부장관 자문으로 격

하되었을 뿐아니라 그 위원장도 문화부차관으로 하기로 시행령에 정한 것은 단지 문헌정보학계와 도서관계의 일방적인 요구로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이 분야의 중요성을 이미 지적한 대로 정부 당국자들이 제대로 읽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월 하순, 정부는 다가오는 2000년대의 기간산업으로 정보산업을 집중 육성하기로 하는 "정보산업육성 국가전략계획"을 세워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 주재로 재무·상공·교육·체신·과기처 장관등이 참석한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경제기획원 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정보산업 실무기획단"을 구성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점은 정보와 이를 확산 보급하여 문화와 과학기술의 향상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도서관의 주무부서인 문화부장관이 이 회의에서 왜 제외되어야 하는가 입니다. 이것은 정부가 아직도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중좌로 보이며, 정보산업의 핵심이 그 하드웨어적인 기반인 정보기기, 정보통신, 정보인력에도 있는 반면, 소프트웨어에도 있으며 정보를 수집, 축적, 가공, 처리하여 정보조사 제공을 하여야 할 정보센터나 도서관에도 정보산업 육성의 한 중요한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도외시한 발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정보산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현재 200만대 수준의 컴퓨터 보급을 1천만대까지 보급하고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해 제조업수준으로 금융, 세제 지원을 넓히기로 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간 데이타베이스망을 구축하는 한편 주요 업종별로 "전자자료교환망(EDI)"을 구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세워 해마다 3천명 정도의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도 하였습니다.

의욕적인 좋은 계획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만 생산 보급하면 문제가 다 풀리는 것입니까? 컴퓨터에서 출력해 낼 수 있는 양질의 정보가 축적되어 사용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부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면서 정보를 필요한 사람과 기관에게 적시에 신속히 제공할 도서관의 문제를 고려에 넣고 국가전략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따라서 문화부를 제외하고, 문화부에서는 이에 대한 이의없이 지나친 것은 잘못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도서관과 정보의 문제가 단순히 어느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가사회전체의 문제임을 간과한 점은 정부의 단견입니다. 이러한 한 예만 들더라도 정보도서관발전위원회가 문화부 소속하에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두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문제는 도서관 행정의 가장 핵심조직이라할 수 있는 부서설정의 단위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일찌기 정보와 도서관문제를 관장할 기구로서 통계청이나 전매청과 같은 외청의 설립을 요구했었습니다. 국가의 여러 여건상 이러한 수준의 행정조직이 어렵다면 정보도서관국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왜 국 수준의 정부조직이 필요한가에 대한 타당성을 정부에 강력히 제시했었으나 결국 과 수준의 도서관정책과를 신설하는데 그쳤습니다. 아마도 정부관계자나 심지어 도서관계에서까지도 그만하면 되지 않았느냐는 의견들을 듣습니다만 이런 정도의 행정조직을 갖고 낙후될대로 낙후된 우리나라의 정보유통문제와 도서관을 발전시킬 중앙부서조직으로는 너무나 미약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국은 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이 공포된 지 1년이 훨씬 지난 지난 7월 하순에 개최한 도서관발전위원회에 내어 놓은 회의자료의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현황에서 제일 먼저 도서관 행정체계를 정비한다고 제시하고, 도서관 행정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공공도서관 관리 운영체계가 다원화되어 있고 도서관 행정 지원체계가 미흡한 점이 당면 문제점이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서관의 행정체계가 이원회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원화되게 마련이며, 그것은 어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국가에 꼭 필요한 과학기술도서관이나 정보센타는 설립주체는 물론 담당부서가 과학기술처일 수 있고, 국립의학도서관은 보건사회부, 국립생명과학도서관 혹은 농학도서관은 농림수산부 소관일 수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도 교육부산하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내무부소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세

운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총괄할 행정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서관발전위원회가 한 부서에 소속되어 있어서는 안되며 상위계층에서 이를 운영하여 각 소관부서에서 파생되는 문제를 통할 조정 혹은 심의하여 건의할 수 있고 어떤 부분까지는 의결권까지를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약점이 없지 않지만 그나마 공공도서관의 문제는 문화부에서 다루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도서관과 대학도서관의 경우는 현재 도서관법이 폐지되었으므로 교육법 시행령이나 대학설치기준령으로 미루어 둘 수 밖에 없는 허점을 안고 있으므로 이 문제에 대하여는 문화부 당국이나 교육부 당국이 협력하여 학교도서관법 혹은 교육도서관법을 제정하여 행정공백을 메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번째 우리나라 도서관 행정의 당면과제는 실제로 도서관을 운영하며,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를 향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문사서직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떠합니까?

우선 공공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직원의 법적기준 달성현황은 44%에 그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장의 보임을 살펴보면 더욱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조사대상 237개관 중 사서직이 관장으로 보임된 곳은 겨우 19명으로 8.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은 1997년 1월부터는 공공도서관의 장을 모두 사서직으로 보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 관장의 충원문제와 관련하여 앞을 내어다 보는 정책적 대안이 꼭 필요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 대안이 도서관계의 여론으로 집약되어 있는 행정고등고시 중 사서직을 신설하여 사서고시제를 실천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임을 강력히 제창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이 결과적으로 사서직의 전문성을 제고함은 물론 국가사회로부터 공인받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으로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사서직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지 못한 현실에 처하여 있습니다. 그 실례를 한가지 더 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도서관진흥법과 시행령에 의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은 국가중앙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데는 분명히 진일보 하였습니다. 정부는 "문화부와 그 소속기관직제 중 개정령"을 공포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을 지원협력부와 열람관리부 등 국 수준의 2개부서를 신설하였으며 5과 1실 1분관에서 7과 1담당관 1분관으로 확대개편된 것은 지난해 12월 17일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명의 부장은 이사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보하게 되어 있어서 사서서기관 1인이 사서직종을 떠나 순수행정계열인 부이사관으로 승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는 사서직을 정부에서 3급이나 그 이상의 직급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사서직군을 행정직군에서부터 독립하여 1급까지 상향조정하여 전문성을 정부로부터 공인받아야 마땅합니다. 연구직군에 분류되어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는 학예연구사나 편사연구사와 최소한 동일하거나 그 이상 상위의 직급까지 사서직이 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차제에 우리는 전향적 자세로서 사서직명을 문헌정보사 혹은 정보사 등의 학계와 일선 도서관계가 합의한 명칭으로 개정하는 것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학문명칭과 학회명칭도 이미 개정된 것을 주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우리 협회에서 연구하여 1990년 12월에 문화부 당국에 보고한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역할 및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에 상세한 견해가 개진되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문제를 환기시키는 것으로 그치려 합니다.

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5조에 이미 사서직원의 전문성을 국내외에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1급 정사서의 자격요건을 규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이는 사서가 충분히 전문가로서의 요건을 갖춘 전문직임을 유감없이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보사회의 주도적이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이 요청되는 이 시점에서 사서의 전문성을 국가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구체적 조치가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그 결론적 조처가 공무원법상의 사서직군의 독립이며 1급까지로 수준을 높이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에따라 여타 공공도서관은 물론 국·사립 대학도서관, 전문연구도서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획기적 전기가 이룩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수한 전문인력이 없는 상태에서 전문인력을 유인할 법적, 사회적 체제가 되어있지 않다면 도서관계의 발전은 결코 기대할 수 없을 것임은 너무도 자명한 소이입니다.

네번째의 문제는 재정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각급 도서관의 법적기준은 나라 현실에 맞게 설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아래 이루어졌으며 그것도 최대기준이 아니라 최저기준이어야 한다는 원칙때문에 선진국의 수준보다 훨씬 하양조정된 것입니다. 그러한 낮은 법적기준에도 어떤 종류의 도서관이든 그 최저기준을 확보하고 있는 곳이 없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정부가 법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인 것입니다. 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는 정부가 어떻게 국민을 지도하고 통치할 수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통계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의 경우, 자료기준에 미달된 도서관이 75%에 이르며, 시설미달 기준에 못미치는 곳은 31%나 됩니다. 대학도서관의 경우, 자료기준에 미달인 도서관이 국·사립을 통틀어 63%이며, 시설 미달관은 66%로서 학문을 연구하고 전수하는 고등교육기관이란 우리나라의 대학의 실상이 이름뿐인 허상을 벗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교도서관은 더 말할 형편도 못되는 것이 아예 형식적이나마 도서관을 설치하지도 않은 학교가 36%나 됩니다. 자료나 시설기준은 아예 운위할 상태조차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도서관의 중요성을 망각했거나 방치한 채로 책임을 져야 할 담당자들이 재원을 확보하고 제대로 도서관을 경영하고자 하는 열의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1987년에 개정된 도서관법에는 도서관진흥기금을 확보하여 도서관의 설립·시설 및 운영에 보조하며 도서관 정보망의 구성과 운영을 보조하고, 도서관 및 도서관 관련단체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등의 사업을 한다고 규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과 시행령 공포 이후 4년여의 기간동안 도서관진흥기금을 확보한 바 없을 뿐 아니라, 문화부로 도서관행정이 이관된 후 도서관진흥법이 새로 제정되고 시행령이 발효된 이후 또다시 2년이 경과한 지금에도 도서관진흥기금 조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최근 문화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함과 인식부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문화부가 요청한 도서관진흥기금 조성비,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 등이 전액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당국이 정보와 도서관의 중요성과 그 생산성을 인식하고 있는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단적인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각종 도서관의 재원이 전적으로 도서관진흥기금에 의거하여 조성되거나 조달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도서관의 설립, 시설 및 자료 확충에 이 기금이 쓰일 수 있다는 도서관진흥법 제10조의 명문규정은 기금조성이 유의미하다는 사실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공립도서관과 국·공립 대학 및 학교 도서관의 경우 공공재정의 지원이 적절한 선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법적 최저기준에도 못 미치는 현황의 획기적 극복은 어려운 것임을 분명히 지적해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의 정책결정과 예산 책정과정에 보다 효율적이며 확실하고 조직적 힘을 응집하여 영향을 미칠 필요성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III

우리나라의 도서관 행정이 당면한 과제는 위에서 제시한 사항이외에도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상에서 언급한 몇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으로 그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협회나 정부당국은 도서관을 전진적으로 발전시키며 당면 행정 과제들을 풀어나가기 위하여 한국도서관협회 혹은 관계 학회는 우리나라 도서관발전의 면밀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갖고 있어야 함은 물론 정부당국도 나름대로 이러한 마스터 플랜을 마땅히 마련하여야 합니다. 도서관 발전의 문제, 당면 행정문제, 재정확보의 문제, 정보의 효율적 유통체계와 이의 발전을 위한 문

제, 사서의 전문성과 사기진작문제, 국민 독서의 활성화를 위한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기 위하여 문화부 산하에 특별육성법에 의한 정보도서관연구소를 설립할 것을 제의하고자 합니다.

이 국책연구소가 설립 운영된다면 문화부장관의 자문기관인 도서관발전위원회의 연구위촉 프로젝트 등을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시의 적절한 도서관 행정과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와 주제들을 연구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서관과 정보의 문제를 논의할 때 우리 전문가들은 우리들의 문제이므로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성을 인정받으려 한다는 국외자들의 논리도 결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문제가 우리 전문가 집단이나 관계자들의 아집과 집단 이기주의에서의 발상이 아님을 대 사회와 정부에 인식시킬 필요성과 증거를 우리들은 얼마든지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이미 서두에서 간략히 살펴 보았지만 현재는 물론 다가오는 세기의 문명과 사회의 구조가 정보를 중점으로 하여 전개 발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외면하거나 부인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정보의 문제, 도서관의 문제에 관하여 그 중심권에 서 있음을 재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지역사회와 나아가서 나라의 융성과 발전, 그리고 생존전략에 필수적인 것임을 직시하여야 하며, 정보를 관리하고 분석 제공하는 도서관의 문제가 국가 차원의 중요 관심사로서 제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급변하는 세계에서의 문화와 생활, 경제와 정치, 기술과 산업, 군사와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의 원활한 정보의 유통과 제공이란 핵심적 과제의 수행없이 우리 민족과 나라가 융성 발전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대안이 없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며, 사회와 정부가 이를 깊이 인식하고 행정적으로 실천되어지기를 요청해 마지 않는 것입니다.

회원 입회절차

회원에 입회코자 하실 때에는
회원입회 신청서에 소정사항을
기재 날인하여 제출하고 소정회비를
납부하시면 회원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 1. 전화신청가능
2. 회원가입시특전은 평생 회원란 참조
3. 연락처 : 한국도서관협회
• 전화 : 535－4868·5616

회원의 구분

회원구분	회비(연)	입 회 기 준
단체회원 1급	180,000원	특별시·직할시·도청소재지의 국공 사립 공공도서관/대학(교)도서관/연구기관 부설도서관/금융기관 및 기업체 부설도서관/중앙부처 부설도서관/군기관 부설중앙도서관/기타 주요도서관
단체회원 2급	120,000원	시소재지의 공사립 공공도서관/전문대학 도서관/관공서 및 사회단체 부설도서관/군기관 부설도서관/기타 주요도서관
단체회원 3급	40,000원	초중고등학교도서관(실)/군읍면소재 공사립 공공도서관
개인회원	15,000원	도서관에 근무하는 직원으로 자격증 (1급정사서·2급정사서·준사서·사서교사)을 소지한 자 및 도서관학을 18학점이상 이수하고 자격증을 소지한 자